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8
----------	-----

발의연월일 : 2016. 6. 28.

발의자 : 김삼화 · 김경진 · 김태흠
이용호 · 김종회 · 김동철
이동섭 · 김광수 · 유성엽
김관영 · 박주선 · 황주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송유관설치자 등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함.

그러나 안전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송유관설치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자격과 직무범위는”을 “자격·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 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안전관리자) ① ~ ④ (생략) ⑤ 안전관리자의 <u>자격과 직무범위는</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안전관리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자격·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u></p>
<p>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 (생략) <u><신 설></u></p> <p>② ~ ⑤ (생략)</p>	<p>제17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p>